

제 3 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제3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사례 29 2019경기조정15·16 추후·손배청구

신청인이 동료 직원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무혐의 처분에 따라 추후보도를 게재하고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해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시청 공무원 A씨가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지난해에도 같은 행위로 감봉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위 보도에 언급된 피의사실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마치 혐의가 인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됐고, 감봉처분을 받은 건은 해당 사항과 무관한 사유에 따른 것이었다며 추후보도 및 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위 보도에 언급된 혐의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몰카를 촬영한 사실은 없다.

■ 조정결과

심리가 개최되기 전 피신청인이 조정대상기사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고 무혐의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를 게재해 이 사건 조정은 취하였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 조정신청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시청 공무원이 동료의 신체를 몰카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7년도에도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인 것이 밝혀졌으며, 그 이전에도 몰카를 찍은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30 2019서울조정614·615/616·617 각 추후·손배청구

전직 보육교사의 제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사실을 보도한 데 대해 추후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이 복더위에 에어컨을 켜지 않았고, 원생에게 막말을 했으며 전날 남은 음식을 먹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어린이집 전직 교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신청인이 아동학대를 했다고 보도돼 결국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원신청하기에 이르렀다며 무혐의 처분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 및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 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보자의 주장에 따른 편파보도를 했다.
- 검찰 수사 결과, 보도된 혐의에 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조정결과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추후보도를 게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신청인의 피해를 고려해 신문 지면에도 무혐의 처분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중재부의 권고에 따라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후보도를 각 게재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A씨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을 복더위에 에어컨을 켜지 않은 방에 방치하고 “지능이 낮다.”고 막말을 하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해당 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에 따르면 B어린이집 원장 C씨는 낮 최고 기온이 31도



까지 오른 지난 달 16~18일 에어컨을 끄고 3, 4세 반 수업을 진행했다. 초복인 17일에도 창문만 열어놓고 수업해 일부 원생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을 정도로 땀을 흘렸다. 에어컨을 켜지 않은 방에서 낮잠을 자 땀을 뻘뻘 흘린 원생도 있었다. 에어컨은 보육교사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19일부터 가동됐으나 설정 온도는 27~30도였다.

C씨가 원생에 대한 막말을 하고 전날 남은 음식을 먹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직 보육교사들 말을 종합하면 C씨는 보육교사나 보조교사에게 특정 원생을 가리키며 “OO은 사제야.” “XX는 밥을 안 먹어 지능이 낮다.” 등 막말을 했다.[중략]

일부 학부모는 C씨가 원생 팔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이날 B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두 달 분량 폐쇄회로(CCTV) 영상도 임의 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분석과 보육교사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판단 결과를 검토한 뒤 원장(C씨)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씨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경찰 수사에서) 나온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며 “그런(원생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A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더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막말을 하는 등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A지방검찰청 수사결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2018년 12월 27일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신문지면 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의 크기 및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과 동일하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위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초기화면 상단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단, 해당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위 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고, 박스처리,

음영처리, 볼드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 보도와 구분되게 한다.

-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는 네이버, 다음 등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게시한 기사 하단에도 위 보도문이 이어서 게재되도록 요청한다.



사례 31 2019서울조정1507 추후청구

무혐의 처분 받은 혐의사실과 관련 고소인의 항고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항고 기각 결정에 따른 추후보도를 게재하고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해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지역에서 여러 개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대표가 직원에게 수면마취제를 섞은 술을 먹여 성폭행했고 검찰의 무혐의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항고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이미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을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적시한 채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지방검찰청은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이유와 같은 취지로 항고기각 결정을 했다.

■ 조정결과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추후보도를 게재하고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열람 차단 조치하여 이 사건 조정은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신청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해 해당 미용실 대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유추 가능하도록 자극적인 내용으로 보도되어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매출감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혐의에 대하여 검찰이 지난 7월 5일 피해자의 항고 및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바 무혐의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례 32 2019대전조정79·80 추후·손배청구

보도에 언급된 대학 교수의 갑질 행위 중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을 중심으로 방송 및 유튜브에 추후보도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대학교 학과장인 신청인이 조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의 성적을 낮게 줘 졸업을 막았고, '카드깡' 수법으로 학교 공금을 횡령하려고 했다고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조교의 일방적인 허위제보만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편집해 신청인이 갑질 행위를 했다고 보도되어 모든 강의가 폐강되는 등 교육자로서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추후보도 및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폭언 및 명예훼손, 학과운영비 횡령, 협박, 성적조작 및 졸업지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지방 검찰청 수사결과 지난 4월 29일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고, 9월 19일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른 후속보도를 검토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조교 B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 역시 B씨가 언론에 제공한 사실의 중요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신청인이 학교 공금을 횡령한 의혹에 관한 사실은 검찰의 판단을 받지 않았으므로 추후보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을 중심으로 방송 및 유튜브 공식 채널에 추후보도하는 것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A 지역의 한 사립대에서 조교를 맡고 있는 B씨.

B씨는 2년 동안 학과장 C교수가 술한 갑질을 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의 성적을 낮게 주라는 등 성적 조작은 물론, 본인이 출근도 안 하고, 대리 결제를 강요하며 사적인 지시를 일삼았다는 겁니다.[중략]

심지어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학교 공금을 빼돌리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교수의 지시를 거부하면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C교수(녹취 내용)]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더니까 내가. 진짜로. 조현병 무지하게 많아. 너 조현병 아냐?”

갑질 교수로부터 피해를 받은 내용을 정리한 대자보가 학교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폭로한 조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A 지역 모 사립대 학과장 C교수가 학과 조교 B씨를 상대로 성적 조작, 폭언과 협박 등 갑질을 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A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해당 교수의 성적 조작, 폭언과 협박에 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으며, 법원에서도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보도문을 조정대상 프로그램에서 방송하되,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화면 아래에 위 보도문 제목을 자막으로 표시한다(자막의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함).
- 위 항에 따른 방송이 끝난 이후 지체 없이 피신청인 유튜브 공식채널에 방송 영상을 업로드하며, 이 영상은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다.